성주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9년 10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변경 (안 제6조의 2)

- 존속기한 : 2019년 12월 31일 → 2024년 12월 31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 필요
다. 규제심사 : 규제 사항 없음 〔기획감사실-7785(2019.8.5)〕
라.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가족지원과-31932(2019.8.7)〕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기간 : 2019. 9. 25. ~ 2019. 10. 15.(20일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2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 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24년 12월 31일--------.